대한비과학회 학술 연구비 관리 내규

제정 2016. 7. 1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대한 비과학회 연구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관부서) 연구비 수혜자 선정 및 연구결과물에 관한 업무는 학술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2 장 연구비 수혜자의 선정
제 3 조(연구비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회비를 납부한 대한 비과학회 정회원
2. 조교수 및 부교수(비전임 교원도 가능)
3.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예정인 자
4. 연구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수나 출장 계획이 있는 자

제 4 조(연구비 지원 신청) 전 제3조의 자격을 갖춘 회원이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실행예산서 등 관계 서류를 대한 비과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연구과제의 심사 및 선정)
① 학술 위원회에서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한다.
② 연구비의 선정은 연구의 창의성 및 우수성,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과 가능성, 연구자의 우수성 등으로 평가한다
③ 위원회 또는 심사위원단에서 제출한 결과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대한비과학회 회장이 연구비 수혜자를 선 정한다.

제 3 장 연구의 수행
제 6 조(연구기간)
① 각 연구비의 연구기간은 1년이다.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제 7 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계획의 변경은 연구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비과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기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대한비과학회장의 위임을 받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
제 8 조(실행예산) 연구비는 연구보조원 인건비 및 연구 장비 재료비 등의 직접비만 가능하며, 기타 연구 수당이나 장려금, 여비 등은 산정 불가한다.

제9 조(실행예산의 변경) 실행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학술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5 장 연구책임자의 의무 등
제 10 조(연구종료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매1년 단위로 연구중간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일까지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한비과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퇴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구중단사유서와 연구경과 및 연구비 정산 보고서를 대한비과학회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단사유서는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되, 연구경과 및 연구비 정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비 집행내역
2. 서론
3. 연구목적 및 배경
4. 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5. 중단된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내용 및 결과
6. 향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 11 조(연구결과의 관리)
연구종료 후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연구결과를 대한비과학회지에 발표하여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사사(acknowledgement) 포함해야 한다.
국문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한비과학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영문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fund of Korean Rhinologic Society in 2016"
연구책임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단독 사사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결과물은 연구개시일 이후에 투고한 논문으로써, 연구개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 투고된 논문이어야 함.
대한비과학회장은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연구완료 불능 여부를 판정한다.

제 12 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한비과학회장은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 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5.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
6. 교직원 신분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제11조 제2항의 의거 연구불능 판정을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기 사용한 연구비의 1/3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의 반환은 연구비 수혜 전에 연구자가 제출한 반환방법에 따르며, 1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